



## 「경찰공무원 시험대비」 경찰형사법 OX 문제풀이(5)

| 최정훈 교수 | 박문각 경찰학원



68. 회사경영자가 내막을 알지 못하는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회사 소재지 지역구 국회의원의 담당사무에 대한 청탁과 관련하여 그 국회의원이 사실상 지배·장악하고 있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게 하였더라도, 그 경영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
69. 수표의 발행인 아닌 자는 부정수표단속법상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지만, 허위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는 허위신고죄를 범할 수 있다. ( )
70. 건설업자 아닌 피고인들이 한국산업규격을 위반한 레미콘임을 알지 못하는 피해 건설업체들을 이용하여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위반한 경우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
71. 공무원이 아닌 甲이 행사할 목적으로 관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점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의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 )
72.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

- 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 )
73. 치과의사가 환자의 대량유치를 위해 치과기공사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경우는 교사범이 된다. ( )
74. 피무고자의 교사·방조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는 교사·방조범의 죄책을 진다. ( )
75.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 행위가 원인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이 성립한다. ( )
76. 甲이 乙에게 丙이 거주하는 집에 방화하도록 교사하였으나 乙이 방화는 하지 않고 丙을 살해한 경우 甲은 현주건조물방화의 예비·음모죄로 처벌된다. ( )
77. 방조행위는 작위에 한하지 않고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 )
78. 종범이 처벌되기 위하여는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정범이 예비의 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이를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
79. 의사 甲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환자 乙이 보험금 수령을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입원을 허가하여 형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도록 한 후 입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乙이 이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甲에게
- 는 사기방조죄가 성립한다. ( )
80. 정범이 절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방조하였으나 정범이 강도를 한 경우 강도죄의 방조범은 물론 절도죄의 방조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 ( )
81. “컴퓨터를 훔쳐오면 문제없이 팔아주겠다”고 말한 것은 실제 절취해 오면 장물을 매각 알선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말을 한 것만으로 사전에 컴퓨터 절도행위를 공동으로 하겠다는 공모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
82. 백화점직원이 자신이 관리하는 특정매장의 점포에 가짜 상표가 새겨진 상품이 진열·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점주 등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상급자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점주로 하여금 가짜 상표가 새겨진 상품들을 고객들에게 계속 판매하도록 방치한 경우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 )
83. 법원의 입찰사건에 관한 제반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이 자신이 맡고 있는 입찰사건의 입찰보증금이 계속적으로 횡령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서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방조범이 성립한다. ( )
84. 공무원 또는 종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종재인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 ( )

### 【 정답 및 해설 】

【 정답 】					
68	69	70	71	72	73
○	X	X	X	○	○
74	75	76	77	78	79
○	○	○	○	○	○
80	81	82	83	84	
X	○	○	○	○	

68. [해설] 대판 2008.9.11, 2007도7204

69. [해설]

수표의 발행인 아닌 자는 부정수표단속법상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지만, 허위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는 허위신고죄를 범할 수도 없다(대판 1992.11.10, 92도1342).

70. [해설]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간접정범의 형태로 ‘건설업자’라는 일정한 신분을 요하는 신분범인 같은 법 위반죄를 범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된다(대판 2011.7.28, 2010도4183).

### 71. [해설]

그 문서의 성립은 진정하며 여기에 하등 작성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으로 의을할 수는 없다(대판 2001.3.9, 2000도938).

### 72. [해설]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대판 2018.2.8. 2016도17733).

### 73. [해설] 대판 1986.7.8, 86도749

### 74. [해설] 대판 2008.10.23. 2008도4852

### 75. [해설] 대판 1991.5.14, 91도542

### 78. [해설] 대판 1976.5.25, 75도1549

### 79. [해설] 대판 2006.1.12, 2004도6557

### 80. [해설]

지문의 경우 종범의 착오 중 양적 초과이므로 방조한 범죄의 종범인 절도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된다.

### 81. [해설] 대판 1984.11.27, 84도1906

### 82. [해설] 대판 1997.3.14, 96도1639

### 83. [해설] 대판 1996.9.6, 95도2551

### 84. [해설]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을 말하고, 교사자나 방조자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공무원 또는 종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종재인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대판 2017.3.15. 2016도19659).